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01월 13일, 이명순의원 대표발의
- 회부일자 : 2022년 1월 17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1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명순 의원)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의 적용과 그 운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여비 수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섭)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공무원 여비의 적용과 그 운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여비 수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대해 정하였으며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부.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평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공무원 여비 지급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원과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조 별표 1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운임(국외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  
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  
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  
일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② 여비는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1. 국내여

비 ; 별표 3 2. 국외여비 : 별표 4 ”를

“②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별지 중 “별표 3”과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